

Q

저는 건설업체 안전관리자로,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데 의문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산업안전관리비 항목 중 건강관리비에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요. 가령, 구급함이나 구급함에 들어가는 약품도 구급기재에 포함되는지, 만약 포함된다면 어느 약품까지 인정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노동부 고시 제2002-15호(2002.7.22)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6번 항목에는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약품 등의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위에서 인정하는 구급기재의 범위를 명쾌히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구급함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가벼운 부상에 대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과 두통, 배탈, 설사, 진통제 등과 같이 일반인이 약품의 사용법 및 용량을 쉽게 알수 있는 상비약의 경우는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간기능 개선, 피로회복등을 위한 드링크 종류는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지난번 개정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니 회시를 부탁드립니다.

1. 개정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조치)의 제6항을 보면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발병위험도 평가자 자격이 언급되지 않은 바, 뇌심혈관계 발병위험도 평가를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도 괜찮은지요?
2.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9조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조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가 없는 사업장에서 건강장애 예방업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세부고시나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요?

A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는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산업보건의)나 보건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 기타 건강관리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산업의학전문 등의 의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주의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방법,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도 평가방법 등을 포함하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지침(가침)”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